

광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439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5. 접수 제586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2015. 12. 31.경 1억 원을 변제기 2016. 3.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는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3. 25. 원고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답 4,129㎡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6. 4. 4.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4. 5. 접수 제586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마. D와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008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9.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4. 6.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4순위 배당액 120,000,000원을 삭제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56,155,951원을 176,155,951원으로 경정한다.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신용보증기금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9나5430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1. 15.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C를 상대로 2019. 3. 29. 광주지방법원 2019차162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C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9. ‘C는 원고에게 197,345,205원 및 그 중 97,345,205원에 대하여는 2018. 4. 7.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4. 9. C에게 송달되어 2019. 4.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던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계속 중에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였고,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2019. 3. 19. 선고되자, 피보전채권 확보를 위하여 C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9. 4. 24. 확정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에 이미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9. 4. 24.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1. 4.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이 변론에 현출되었던 점,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피고였던 원고 역시 이 사건 관련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2019. 3. 19. 선고된 점, 원고는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C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2019. 3. 19.경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2019. 3. 19.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9. 4. 24.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1. 4.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광산구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521.984㎡

2층 521.984㎡

3층 521.984㎡

4층 513.884㎡

5층 513.884㎡

6층 513.884㎡

7층 513.884㎡

8층 513.884㎡

9층 513.884㎡

10층 513.884㎡

11층 513.884㎡

12층 513.884㎡

지하층 489.30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 1877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16.18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8773.7분의 64.536

-이상-